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211 발의연월일: 2025. 4. 29.

발 의 자:이인영·박선원·김용만

김동아 · 장철민 · 김기표

이학영 · 민병덕 · 박성준

이정문 · 임오경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소환투표운동에 관해서는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등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주민소환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그런데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주민소환투표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여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 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주민소환투표 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 참여 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 2. 투표소(사전투표소를 포함한다)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제3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20조의2 단서를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 참여 권유활동을 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소환투표 참여 권유활동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되는 주민소환투표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20조의2(주민소환투표 참여 권
	유활동) 누구든지 주민소환투
	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2. 투표소(사전투표소를 포함한
	다)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
	<u>는 경우</u>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32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제20조의2 단서를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 참여 권유활동
	<u>을 한 자</u>